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77 호 2026. 8. 27.(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71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26-16)].....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77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56)].....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78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26-13)].....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79호[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09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52)].....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13호[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허가26-53)].....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15호[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허가26-54)].....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26호[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연장 공고 (허가26-38)].....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27호[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3차조사)].....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36호[「산전교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38호[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연장 공고 (허가24-4)].....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40호[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41호[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류) 결정(신설) 안 열람공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44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2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48호[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연장 공고 (허가21-108)].....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52호[「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5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 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7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26-16

나. 허가 연월일: 2026. 9. 1.

2. 점용·사용의 목적: 인공구조물의 설치(상수도관(D100m), 가압장(4.0×2.0×1.8))

3. 점용·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59-2번지 일원(무룡로)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일시 643.3㎡, 영구 21.4㎡

나. 기 간:

- 일시: 2026. 9. 1. ~ 2026. 12. 31.

- 영구: 2026. 9. 1. ~ 2041.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

6.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7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농소1동 주민자치회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마동로 **		
점 용 위 치	○ 신천동 745-118번지 일원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농소1동 숲영화제 개최 등	점 용 면 적	○ 1,200㎡
점 용 기 간	○ 2026. 8. 29.(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7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6. 8. 27.
2. 점용·사용의 목적 : 공동(도시형생활)주택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및 공사용웬스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연암동 1320-38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당초 : (일시) 8m²
 - 변경 : (일시) 32m²
 - 나. 기 간 :
 - 당초 : (일시) 2026. 6. 18. ~ 2027. 5. 31.
 - 변경 : (일시) 2026. 6. 18. ~ 2027. 8.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양노홍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로 66, 상가동 1층 101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79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창평동 882-6 외 4	호계로 101	2026. 8. 26.	2026. 8. 27.	2001. 3. 22	법정동인 호계동 명칭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함
가대동 805	가대서길 56-9	2026. 8. 26.	2026. 8. 27.	2004. 8. 9.	가대동 서쪽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상안동 525	상안새터길 55	2026. 8. 26.	2026. 8. 27.	2004. 8. 9.	기존 자연마을인 상안새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어물동 313	성골길 29-13	2026. 8. 26.	2026. 8. 27.	2004. 8. 9.	기존 자연마을인 성골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연암동 461-1	상방3길 14	2026. 8. 26.	2026. 8. 27.	2004. 1. 5.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
양정동 451-5	양정3길 2	2026. 8. 26.	2026. 8. 27.	2004. 1. 5.	버드나무가 많아 양정이라 불린 것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함
송정동 1162-5	송정8길 1	2026. 8. 26.	2026. 8. 27.	2018. 5. 10.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찬샘1길 54-2	26.08.25.	건물멸실	아파트 부지 조성
찬샘1길 54-4	26.08.25.	건물멸실	아파트 부지 조성
상방3길 14	26.08.25.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무룡1로 11	23.11.24.	건물멸실	공원 조성
양정3길 2	24.06.26.	건물멸실	주차장 조성
양정3길 8-1	26.08.26.	건물멸실	주차장 조성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09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 (신정동)		
점용 위치	○ 북구 명촌동 1000-1번지 일원	노선명	○ 대2-7호선 (아산로)
점용 목적	○ 송수관로 누수감지장비 설치	점용 면적	○ L = 12.0m ○ A(일시) = 36.0㎡ ○ A(계속) = 11.3㎡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13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박성수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매곡동 470-1(약수2길 88) 인접도로	노선명	○ 중1-314 ○ 중2-549
점용 목적	○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132.0m ○ A(일시) = 327.6㎡ ○ A(계속) = 28.56㎡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15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대운건설(주) 대표 조병옥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모두박길 1-4		
점용 위치	○ 매곡동 470-1(약수2길 88) 인접도로	노선명	○ 중2-549
점용 목적	○ 하수관로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9.0m ○ A(일시) = 16.2㎡ ○ A(계속) = 1.35㎡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1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26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박성수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호계동 1019-3 (당수골25길 31) ○ 호계동 715-17 (동대로 20) ○ 송정동 1242-10 (곡리4길 16)	노선명	○ 소1-32 ○ 소2-135 ○ 소2-454
점용 목적	○ 도시가스 인입공사	점용 면적	○ L = 17.0m ○ A(일시) = 46.4㎡ ○ A(계속) = 1.02㎡
점용 기간	○ 일시 : (당초) 2026. 7. 16. ~ 2026. 8. 14.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변경) 2026. 7. 16. ~ 2026. 9. 13.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27호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3차조사)

우리 구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행위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통지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 (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행위자	반송주소	위반장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김*화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성 9안길 **	구유동 455	가설건축물, 물건적치	폐문부재 등
윤*현	울산광역시 북구 덕곡길 *	천곡동 769-3	가설건축물	폐문부재 등
정*욱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	대안동 455-7	가설건축물, 경작	폐문부재 등
박*경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7길 **	달천동 892-25	가설건축물, 물건적치	폐문부재 등

6. 고지사항

- 가.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을 통지(공고)하오니, 2026년 9월 22일(화)까지 사진 원상회복하여 그 결과(사진 등)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불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위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및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이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라.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36호

「산전교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하락하여 통행제한 중인 산전교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41번지 ~ 중구 동동 171-2번지
- 사업내용
 - 1안. 산전교 철거
 - 2안. 산전교 보수·보강
- 사업비
 - 1안 시 약450백만원 소요
 - 2안 시 약1,360백만원 소요
 - ※ 산전교의 노후도를 고려하였을 때, 안전점검 비용(연간 약40백만원) 및 향후 보수·보강 비용 추가 발생
- 사업시행 : 북구청(건설과)
- 사업기간 : 2027. ~ 2028. 예정
- 교량제원 : L=135.65m, B=5.0m
- 위 치 도 : 붙임1 참고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청취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6. 8. 27. ~ 2026. 9. 16.)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등(우편의 경우 공고기간 내에 도착 건에 한함)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2층 건설과
- 기타사항 : 상기 기재된 사업기간, 규모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건설과 (☎052-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위치도 및 우회도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붙임 2.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산전교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위		치	북구 진장동 1041번지 ~ 중구 동동 171-2번지 일원			
사	업	시	행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의	견	제	출	자	(성명)	(연락처)
의견내용				- 산전교 철거(○/×)		
				- 산전교 보수·보강(○/×)		

2026년 임기 임기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38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한***주택**		
주소	울산광역시 *구 *가 17길 **-6		
점용 위치	○ 연암동 832-10번지 일원 ○ 연암동 817-2번지 일원 ○ 효문동 223번지 일원 ○ 효문동 945-25번지 일원 ○ 효문동 819번지 일원	노선명	○ 중1-40호 ○ 중1-41호 ○ 중2-41호 ○ 중1-9호
점용 목적	○ 상수관로 이설공사 ○ 오수관로 설치공사	점용 면적	○ L = 853m ○ A(일시) = 1,475.2㎡ ○ A(계속) = 255.9㎡
점용 기간	○ 일시 : 2024. 1. 3. ~ 2027. 8. 31. (607일)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4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상점가명 : 상안 골목형상점가 등 5개소

2. 지정구역

등록번호	골목형 상점가명	업무구역	규모		지정일자
			면적(m²)	점포수(개)	
2026-21	상안 골목형상점가	신답로 30, 32, 32-1, 36, 40, 48 아진로 31, 33, 35, 38, 41-3, 41-5, 41-7, 41-9, 41-10, 41-11, 41-12, 41-13, 41-14	10,109.4	106	2026.8.25.
2026-22	중산이화 골목형상점가	이화5길 10, 12, 14-2, 14-4, 14-6, 20, 23, 29-2, 29-3, 29-4, 32	2,946	52	
2026-23	일동미라주상가 골목형상점가	중산로 43, 47-1, 48-1	1,005.9	19	
2026-24	매곡신천 골목형상점가	매곡1로 27, 55-19, 55-20, 55-21, 55-23 신천로 53, 53-1, 53-2, 53-3, 55, 55-9, 55-14, 55-18, 55-19, 57, 60	4,557.4	54	
2026-25	매곡에뜰2차 골목형상점가	호계매곡1로 32	1,363.5	22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 경제일자리과(052-241-7277)로 연락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41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사유서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36	소2-88	신천동 748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A	- 노선 신설 - B=8m, L=36m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재결정

2.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8. 27. ~ 2026. 9. 10. (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4. 열람장소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견서 제출 서식)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A호선) 결정“안” 주민열람 의견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제출의견]

2026. . .

제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4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서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영업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및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5.(화) ~ 2026. 9. 21.(월) / 20일간**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 제7항
4. 말소예정일 : **2026. 9. 22.(화)**
5. 고지사항
 - 위 업소 영업자께서는 당해 업소의 직권말소(예정)에 대하여 우리 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직권말소 절차가 종료됩니다.
6. 문 의 처 : 북구청 농수산과 축산원에게 (☎052-241-8082)
7. 대 상 :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소재지	직권말소 사유	세무서 폐업일
식육판매업	제2000-0254227호	동해식육숯불갈비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중앙로 39(효문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3.10.05.
식육판매업	제2019-0258344호	하늘채할인마트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2길 8(효문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2.10.31.
식육판매업	제2022-0338823호	한우한돈정육점	울산광역시 북구 신하중앙3로 142, 104호(산하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4.10.22.
식육판매업	제2022-0338067호	(주)울산축산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1로 60, A-45호(진장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2.08.31.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제2014-0254337호	농가소 돼지 도매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22(호계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5.04.08.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제2016-0254582호	한우랑돼지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61번지(천곡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4.03.19.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제2019-0258169호	소고기사도돼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산11-22, 103호(호계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3.02.23.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제2020-0258759호	삿갓돌 한우프라자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45-252(산하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2.12.27.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제2020-0258829호	지우미트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109(송정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4.10.15.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제2020-0260606호	황금육(肉)선생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1로 60, 1층(진장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3.04.17.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제2021-0258599호	고기의 품격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34, 쌍용아진 4차상가(천곡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3.01.01.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제2023-0346219호	고기서고기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길 55(산하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4.04.10.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48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장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7길 24-6		
점용 위치	○ 연암동 600-2번지 일원 ○ 연암동 841-1번지 일원 ○ 연암동 1265-85번지 일원 ○ 효문동 223번지 일원 ○ 효문동 337번지 일원 ○ 효문동 754번지 일원	노선명	○ 중1-41 ○ 중1-41 ○ 중1-9 ○ 중2-41 ○ 중1-42 ○ 중2-43
점용 목적	○ 우오수관로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362m ○ A(일시) = 746.9㎡ ○ A(계속) = 166.7㎡
점용 기간	○ 당초 : 일시점용 : 2021. 11. 1. ~ 2026. 8. 31. (착공일로부터 1,765일간) 영구점용 : 준공일로부터 10년 ○ 변경 : 일시점용 : 2021. 11. 1. ~ 2027. 8. 31. (착공일로부터 2,130일간) 영구점용 : 준공일로부터 10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152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5조)
- 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 점검평가(안 제6조 ~ 제8조)
- 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운영 및 교육(안 제9조 ~ 제10조)
- 마.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안 제11조)
- 바.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안 제12조 ~ 제19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근로기준법」 제2조
-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전화번호 : 052)241-7714 팩스번호 : 052)241-7709
- 전자우편(E-mail) : kbs5528@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 번호	
	주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노동자, 사용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해촉사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차. (생략)
- 3.~7. (생략)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9. (생략)

② (생략)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문화국 경제일자리과 지방행정서기 김보선(052-241-7714)